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58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정연구

피 고 주식회사 Q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황석현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R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R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3. 1. 17. 접수 제6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에서 2021. 5. 14.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S과 주식회사 R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1) S와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는 2021. 5. 6. S이 R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 일체를 대금 2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R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1. 5. 12. 접수 제6746호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S과 R는 2021. 6. 29.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중 대금을 2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계약의 세부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의 R 등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

원고들은 2021. 9. 2. 이 법원에 ① S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② R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21가합5399).

라. R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1) R와 피고는 2023. 1. 13. R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합계 1,959,749,646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3. 1. 17. 접수 제69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R의 재산상태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적어도 다음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1)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증거
1	원고들 및 T, U	315,098,157	갑 9-1
2	V은행	650,000,000	갑 7-4
		1,100,000,000	갑 7-4
3	W조합	960,000,000(채권최고액)	갑 6-2
4	X	500,000,000(채권최고액)	갑 6-2
합계		3,525,098,157	

바. R 등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선고 및 확정

이 법원은 원고들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2023. 8. 24. ① 원고들의 S에 대한 청구는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만 일부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고, ② 원고들의 R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3. 9.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 관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가운데 E 등 8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위 8인과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8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

E 등 8인은 S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는 위 8인의 임금을 체불하였는데, 피고가 부제소합의를 한 문서라고 주장하는 합의서는 피고의 위 8인에 대한 임금과 관련된 처벌불원서 내지 합의서로서 원고들이 R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와는 관련이 없다.

2) 인정 사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G, N, O(이하 ‘원고 G 등 3인’이라 한다)은 각자 2024. 3. 18. 피고와 ‘처벌불원 및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벌불원 및 합의서

주식회사 Q(이하 ‘회사’)과 G2) (이하 ‘합의자’)는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힙니다.

아 래

1. 회사는 합의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합의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고려하여 산정한 원3) 을 2024. 3. 23.까지 지급한다.
2. 합의자는 위 제1항에 따른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합의자와 회사의 법률관계는 일체 소멸함을 확인하며, 그 외에 어떠한 민사상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한다.
4. 합의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 진정, 조정, 중재 등 일체의 민 형사상의 쟁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나) 원고 H, I, K, L은 각자 2023. 12.경 피고와 ‘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원고들이 작성한 해고서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고서

Q(이하 ‘갑’)과 을(이하 ‘을’)4) 은 아래와 같이 해고 절차 이행에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본 해고서를 통하여 2023. 12. 31.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4. 본 서면을 통하여 갑은 을의 임금과 퇴직금(w)5) 을 보장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그 지급 기한은 202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5. 을은 위 임금,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갑에 대하여 그 어떠한 금전 등 채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6. 갑, 을은 위 제6항의 약정과 같은 취지에서 본 합의로서 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 누구에게도 민사, 형사, 행정상의 소송, 진정 등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다) 원고 E, H, I, K, AA(이하 ‘원고 E 등 5인’이라 한다)은 각자 피고와 ‘영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 수 확 인 서

Q(이하 ‘갑’)과 피용자 (이하 ‘을’)6) 은 2023. 12.경 작성한 해고서의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본 영수확인서를 작성한다.

1. 을은 본 확인서로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에 근거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 일체의 권리(잔여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권리 포함)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전부 변제받았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을은 모든 권리를 보장받았으므로, 기존의 합의 내용에 따라 민 형사, 행정상의 모든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등 일체의 분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3) 판단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R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들의 R에 대한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원고 AB 등 3인과 원고 E 등 5인이 피고와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 및 확인서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거나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합의서 및 확인서는 그 문언상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원고들이 R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R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S과 R의 위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와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도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S과 R의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및 확인서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 등에 대해서만 부제소합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제척기간 관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2023. 1. 13. 체결되었으나 실제로 피고와 R는 2022. 3.경 피고가 R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22. 3.경 R와 피고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과 R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R(대표이사 AC)과 주식회사 AD(대표이사 AE)이 2022. 3.경 주식회사 R의 사업 일체를 주식회사 AD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AF(대표이사 AG)가 주식회사 R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R를 실제로 소유하고 운영한 사람이 AG인 사실, 피고의 실소유자가 AH와 대표이사 AI(AH의 동생), AE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사업의 양수인 측에 해당하는 AH, AI, AE가 양수주체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양수주체의 변경을 예정하였고, R에 대한 기업실사를 거친 후 자산양수도의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2022. 12. 29. 피고를 설립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R의 사업을 양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체결은 동일성이 있는 연속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시점인 2022. 3.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체결이 동일성이 있는 연속된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2022. 3.경에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사실, 나아가 채무자에 해당하는 R에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들이 R를 상대로 S과 R가 체결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이 원고들의 R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R가 원고들에게 가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R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R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R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물반환으로서 피고는 R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R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R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우석, 판사 김혜림, 판사 신철순

별지

- 1) 원고들은 R가 피고에게 1,959,749,646원, 신용보증기금에 718,382,472원, V은행에 1,351,800,000원, Y은행에 49,604,000원, Z카드에 41,46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소장 13-14쪽), 피고에 대한 1,959,749,646원은 R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채권에 해당하고, 나머지 채무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이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6호증의 1, 제6호증의 3, 제8호증의 2는 S의채무에 관한 것이다).
- 2) 합의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 3) 원고 G는 6,912,645원, 원고 N은 6,670,308원, 원고 O은 2,782,906원이다.
- 4) 해당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 5) 원고 H은 2,586,955원, 원고 I는 6,186,276원, 원고 K은 6,786,836원, 원고 L은 4,796,009원이다.
- 6) 해당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